

자나깨나 영업비밀 보호

IT벤처기업이나 디지털 콘텐츠기업에게 있어 영업비밀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들 중 임직원들의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제한, 비밀유지 서약 등 영업비밀에 대한 보안대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유출을 시도하는 주된 주체는 퇴직 임직원이 69.4%, 현직 임직원이

❖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에 생산방법 등 기술상의 정보 뿐만 아니라, 판매방법, 거래처 리스트, 제품 판매계획, 광고요령, 조직개편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된다.

❖ 주위에 알려진 내용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나?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비밀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쉽게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한상태가 유지되는 한, 영업비밀로서 인정될 수 있다.

❖ 다른 사람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나?

영업비밀을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부정취득행위’라 하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뒤따른다. 또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렇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역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되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려 주어도 문제가 되나?

일단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행위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면 그러한 영업

비밀을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누설하더라도 이 역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 영업비밀 누설에 대한 형사책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형사책임 또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점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지만 형사책임은 지지 않는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의 없이 과실로 이루어진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 퇴직 후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나?

근로관계 존속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의 원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한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취업규칙에서 영업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회사에 영업비밀 준수 서약을 하고 입사한 근로자가 다른 업체로부터 고액의 연봉을 제시 받아 스카우트되어 종전 업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사안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16.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을 투입해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고서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영업비밀이 경쟁업체에 유출되어 소송에 휩싸이거나 경쟁력을 잃게 되기도 한다. 영업비밀의 보호는 한 기업의 존망을 넘어 그야말로 국가의 성장동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제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득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은 입증의 난이도,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액수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손해액에 관한 한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 손해배상 이외에 어떤 구제책이 있나?

영업비밀을 침해 당한 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손해배상과 함께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취업제한 조치가 가능한가?

통상 근로계약이나 퇴직 시 합의서에서 퇴직자에게 일정기간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러한 약정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법원은 대략 1년 정도의 취업제한기간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령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조치의 일환으로서 종전 회사는 법원에 전직금지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개발한 기술도 영업비밀인가?

근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개발한 발명이 그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근로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이를 '직무발명'이라고 한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이 등록되는 경우, 사용자는 자동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전계약이나 근로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귀속되기로 규정된 경우, 그러한 계약이나 규정은 유효하다. 사전계약이나 근로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귀속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이익·근로자의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영업비밀을 수출하는데 제한이 있나?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전략기술에 해당되거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술을 해외로 수출함에 있어서는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 엄재민

- 법무법인 화우(02-6003-7524, jmuhm@hwawoo.com)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유럽경영대학원(Insead) 경영학석사(MBA)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Trade Secret